

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9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2. 개정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2조 등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조문 용어 통일 (안 제1조, 안 제14조, 안 제4장 제목, 안 제16조, 안 제17조)
- 나.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(안 제3조, 안 제14조, 안 제 31조)
- 다.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(안 제12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1년 12월 9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 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>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환경보전과 수질관리팀)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환경보전과(우 10932)
 - 전화 : 031-940-4463 / 팩스 031-940-4459 / 이메일 kimhk0620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➔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